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 안 번 호	52

발 의 년 월 일 : 1992. 1. 29.
발 의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 안 이 유

'90. 11. 6자로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 (령 제13156호)에 의거 공유재산의 대부료 등을 산정함에 있어 공시지가를 이용하여 재산가액을 산정함에 따라 일부지역의 대부료 등이 급격히 상승하여 대부료 등 부담이 일시에 높아지는 문제점이 있어 대부료등의 산출액이 급증하지 아니하도록 대부료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2. 주 요 골 자

구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·수익하는 경우에 전년도 연간 대부료보다 10%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하향 조정함.

(안 제22조의 2)

3. 관 련 법 규

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제 호

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유재산 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22조의 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2조의 2 (대부료등에 관한 특례) 구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, 수익하는 경우에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 대부료(사용료, 변상금을 포함한다. 이 조에서 이하 같다)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대부료보다 10%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년도의 대부료 인상률은 제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.

증 가 율	대 부 료 인 상 률
10%이상 － 20%미만	10%＋(증가율 － 10%)×0.3
20%이상 － 50%미만	13%＋(증가율 － 20%)×0.1
50%이상 － 100%미만	16%＋(증가율 － 50%)×0.06
100%이상 － 200%미만	19%＋(증가율 － 100%)×0.03
200%이상 － 500%미만	22%＋(증가율 － 200%)×0.01
500%이상	25%＋(증가율 － 500%)×0.005

부 칙

① (시 행 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 (대부료등의 산정기준에 대한 적응례) 제22조의 2의 규정은 1990년 11월 10일 이후의 대부료 (사용료, 변상금을 포함한다)의 결정에 적용한다.

신·구 조문 대비표

<table>
<tr><th>현 행</th><th>개 정 (안)</th></tr>
<tr><td>(신 설)</td><td>제22조의 2(대부료등에 관한 특례) 구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, 수익하는 경우에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대부료(사용료, 변상금을 포함한다. 이조에서 이하 같다)가 전년도에 납부하여야 할 연간 대부료보다 10% 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 년도의 대부료 인상율은 제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.

<table>
<tr><th>증 가 율</th><th>대 부 료 인 상 율</th></tr>
<tr><td>10%이상 － 20%미만</td><td>10% +(증가율 － 10%)×0.3</td></tr>
<tr><td>20%이상 － 50%미만</td><td>13% +(증가율 － 20%)×0.1</td></tr>
<tr><td>50%이상 － 100%미만</td><td>16% +(증가율 － 50%)×0.06</td></tr>
<tr><td>100%이상 － 200%미만</td><td>19% +(증가율 － 100%)×0.03</td></tr>
<tr><td>200%이상 － 500%미만</td><td>22% +(증가율 － 200%)×0.01</td></tr>
<tr><td>500%이상</td><td>25% +(증가율 － 500%)×0.005</td></tr>
</table>
</td></tr>
</table>